

국가 간 소득이전을 제재하는 BEPS* 도입과 기업의 대응 노력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조주현 수석연구원, 경영연구센터 (nathancho@posri.re.kr)

목차

1. BEPS의 도입 배경
2. BEPS의 도입 과정
3. 각국의 BEPS 도입 현황 및 대응
4.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최근 전 세계 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과도한 역외탈세를 제재하여 이른바 ‘조세 구멍’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과거 구글, 애플 등은 법인세율과 관련 규제수준이 낮은 벨기에,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두고 해외매출에 대한 세금을 낮게 지불
 - 그러나 G20국가를 시작으로 OECD가입국들도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조세회피로 인한 국가 세원잠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BEPS* 도입에 합의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 조세규제 수단(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
- **BEPS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외 기업구조, 국제 거래내역, 재무실적 등 관련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16년부터 작성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BEPS는 기업의 국내외 주요 거래관련 정보를 각국이 공유하여 과세 일관성 확보 및 국제 조세관련 기준 강화, 그리고 과세 확실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
 - 현재 16개국이 개정안 발표 또는 법안 통과*. 한국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매출 1천억 원 초과 및 해외매출 500억 원 초과 기업은 모두 포함

* 2015년 12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조(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

 - 2017년 법인세 신고기한(3.31)까지 국제거래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3천만 원 이상 벌금 부과
- **BEPS 규제는 과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해 조세절감 효과를 누려왔던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 해외 수익감소, 글로벌 사업장 중요정보 노출 등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 **2015년 말 BEPS 최종 승인 이후 각국별로 세법개정 및 적용 준비 중. 한편 법인세 인하 정책 및 기업들의 사전 협상 등 대응책 마련 움직임 활발**
 - 각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를 도입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등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기업들의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유도
 - 또한 구글(前 정부 고위관료를 로비담당으로 영입), 애플(팀 쿡 CEO가 직접 조세분쟁 협상 참여)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
 - 다국적 기업들은 BEPS 도입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구조 재검토 및 정책 수정,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신청도 고려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기업이 사전에 과세당국과 합의를 통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소득을 조정하여 조세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제도
- **올해 도입되는 BEPS에 대한 이해와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방향 모색 필요**
 - BEPS 도입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최우선. 관련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가 충원, 시스템 개선 필요성 검토 등 경영 인프라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
 - 세부내용 개정 중인 상황에서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상호협의 및 의견교류 창구 확보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세무정책 개선 등 노력 필요

1. BEPS의 도입 배경

□ 최근 전 세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기업의 과도한 역외탈세를 제재하여 이른바 ‘조세 구멍’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과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율과 관련 규제수준이 낮은 벨기에,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두고 해외매출에 대한 세금을 낮게 지불해 왔음

- 구글의 경우, 본사가 있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회사들이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구글 아일랜드가 보유
-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기 때문에 아일랜드로 수익을 이전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됨
- 지난 해 총 매출의 80%를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구글은 해당 수익의 2.4%만 세금으로 지불

○ 그러나, G20를 시작으로 OECD 가입국들도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조세회피로 인한 국가 세원잠식을 지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도입하기로 합의

- 전 세계 각지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지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수입 감소는 국가 재정확보에 부정적 영향이 막대함
- BEPS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즉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과 국가 간 조세법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규제 수단
- BEPS 도입은 과거에는 세금납부 여부만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전 세계가 거래정보를 공유하여 과세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과세하여 과도한 조세회피를 막고 적정 조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 G20 국가를 시작으로 BEP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OECD 34개국 포함 60여 개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새로운 조세규제를 적용할 예정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BEPS의 주요 내용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영위 및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 모색 필요

- 글로벌 각지에 해외 생산/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BEPS 도입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수익성 회복이 절실한 해외 비즈니스에 ‘역풍’이 될 수 있음

- BEPS 도입에 대한 이해와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세법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관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2. BEPS 제도의 도입 과정

□ BEPS 도입의 시작은 영국에서 처음 사용한 일명 ‘구글세’ 였으나,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사업 또는 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과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세금을 지칭하는 ‘구글세’는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 영국은 2014년 10월, 기존에 검토해 오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제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2015년 4월부터 시행 중

○ 한편 영국의 우회이익세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과소 과세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상 한계 존재

- 예를 들어 영국 정부가 구글이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대략 추측은 가능하나 어떠한 거래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납세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어려움

○ BEPS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여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공동 대응

□ BEPS는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 후 OECD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그 결과, ‘15년 11월 최종 보고서가 승인되면서 ‘16년부터 각국별 법제화 완료 후 개별 시행 계획

○ 미국, 영국, 한국 등 G20 국가들은 BEPS 도입을 위해 2013년 9월 BEPS 공식 프로젝트를 출범하였고, OECD가 담당하여 BEPS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세부내용을 제시하도록 함

- 2014년 7월 OECD 이사회에서는 디지털 경제 등 7개 과제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완성, 같은 해 9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해당 보고서가 승인됨
- 이후 1년 동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2015년 10월 OECD 이사회에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
-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승인되면서 각국의 입법 절차

를 요구하는 국제협약 체결로 인해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세법 개정안에 BEPS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반영(국조법 개정¹)

- 해당 세법 개정에 대한 시행령도 공포하였으며, 그 외 다른 관련규칙도 올해 내 추가 반영 예정

○ BEPS의 주요 추진 방향²은 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 조세관련 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 과세 확실성 강화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과거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사용해왔던 국가 간 세법 차이, 특히 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의도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
- 또한 실시간 변화하는 글로벌 거래환경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을 재정비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거래정보를 공유하여 과세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기업들이 과세 원칙 및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 수행되어왔던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BEPS 도입에 따른 세 종류의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전 세계 해당 국가에 회사 지배구조 및 재무실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통합기업 보고서:** 마스터파일 성격으로 그룹 지배구조, 진출한 각 나라별 사업장 및 주요 공급망 현황(상위 5개 또는 5% 이상 매출 제품 및 서비스), 특수관계자 거래, 유무형자산 관련 계약 및 거래정보 등 포함
- **개별기업 보고서:** 기존 이전가격 보고서와 유사하나 현지 세부 보고라인, 사업구조 변경 내용, 지적재산권 관련 거래내역, 주요 경쟁사 및 특수관계자 관련자료, 이전가격 결정에 활용된 재무자료 등 추가
- **국가별 보고서:** 1조원 이상 매출 기업이 대상이며 국가별 매출액, 영업 이익, 세금납부 실적 등 다국적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 및 성과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며 나머지 보고서와 달리 2018년부터 공유될 예정

3. 각국의 BEPS 도입 현황 및 대응

□ 2015년 말 BEPS 최종보고서 승인 이후 실시된 PWC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하여 총 22개 국가 중 16개국이 세법 개정안 발표 또는 법안 통과, 나머지 6개국은 조만간 개정안 발표 예정

¹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조(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

² 2015.10. 기획재정부. 'OECD/G20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참조

- 한국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 매출 1천억 원 초과 및 해외매출 500억 원 초과 기업은 국내외 기업구조, 거래내역, 재무실적 등 국제 거래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올해부터 작성해 2017년부터 과세당국에 제출 필요

- BEPS 도입 관련법안 통과 이후 2015년 12월, 국제 조세규정이 개정되면서 2017년 법인세 신고기한(3.31)까지 국제거래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상 벌금 부과

〈주요 국가별 BEPS 도입 현황 요약³⁾〉

국가	법제화 현황	통합기업/개별기업 보고서제출대상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적용 시기 (최초)	신고기한 (최초)	미신고 가산세
한국	법안 통과	매출1천억원초과 국제거래500억원 초과	-	2016	법인세신고기한 (2017.3.31)	3천만원 이상
호주	법안 통과	전세계매출10억 AUD이상	전세계매출10억 AUD이상	2016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1년 이내	600AUD 이상
프랑스	법안 통과	-	연결매출 7.5억유로초과	2016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1년 이내	1만유로
아일 랜드	법안 통과	-	연결매출 7.5억유로초과	2016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1년 이내	1.9만유로 이상
일본	개정안 발표	전년매출1천억엔 /무형자산거래3억엔, 기타거래50억엔이상	전년매출1천억엔 (약8.2억USD)초과	2016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1년 이내 /법인세신고기한	가산세 부여
미국	개정안 발표	-	전년연결매출 8.5억USD초과	법안 통과 이후	법인세신고기한 (9.30)	-
영국	개정안 발표	-	전년연결매출 8.5억유로초과	2016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1년 이내	-

³ PwC Global Tax Update 자료 및 한국경제(2016.1.26) 참조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 도입은 정부 재정수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과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해 조세절감 효과를 누려왔던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

- BEPS 도입으로 국가별 추가 과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조세개정 적용 대상에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면서, 조세절감에 대한 걱정 사유를 과세당국에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짐
- 해외수익 감소, 글로벌 사업장 중요정보 노출 등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한편 현재 16개국이 개정안 발표 또는 법안 통과, 한국을 포함한 법안 통과 국가들은 올해 내 법안 세부내용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며 그 밖에 독일, 인도, 노르웨이, 스위스, 남아공, 벨기에 등도 곧 개정안 발표 예정

□ 각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으로 BEPS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들의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딜로이트(Deloitte)의 조사결과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세계 143개국 중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제시

-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은 해외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다시 옮기는 경우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춰 적용
- 일본은 실효세율을 작년 기준 32.11%에서 올해 29.98%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영국도 2011년 28% 수준의 세율을 20%까지 하향 조정
- 인도는 현재 40% 수준의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25%로 낮출 예정

□ 또한 BEPS 도입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전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

- 구글과 애플의 경우, BEPS 도입은 세금 폭탄 뿐 아니라 자사의 글로벌 사업장 기밀 노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과세당국과 협상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구글은 IMF에서 10년간 근무하였고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특사로 활약한 前 국가안보부 보좌관 출신인 캐럴라인 앳킨슨(Caroline Atkinson)을 세계정책팀 수장으로 영입

⁴ 2015.10. 안진 Deloitte가 주최한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 참고

- 구글은 인터넷 검색엔진 및 스마트폰 운영체제 독점, 유럽 사용자 개인정보의 본국 이전 불가 등 주력 시장인 유럽에서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前 백악관 고위 관료(글로벌 로비담당)를 영입, 각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위기 극복 시도
- 애플은 지난 1월 팀 쿡(Tim Cook) CEO가 직접 전용기를 타고 브뤼셀로 날아가 EU 집행위원회에 국제 조세관련 분쟁에 대한 의견을 개진
 - 애플은 본국 외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 1,800억 달러(약 214조원)를 미국 외 시장에 보유하고 있으나, 만약 본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약 600억 달러(70조원 수준)의 세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함
 - 한편 EU는 애플이 해외영업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세금을 불법으로 탈루하려 하였다는 점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 쿡 CEO가 EU의 반독점 당국 책임자를 직접 만나 해당 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협상을 위한 노력 중

4. 결론 및 시사점

□ 올해 도입되는 BEPS에 대한 이해와 함께 조세제도 개정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선제적 관점의 대응방향 모색 필요

- 현재는 BEPS 도입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최우선, 또한 자사에 미칠 영향 분석과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
 - BEPS 적용 대상이 되는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및 해외 매출 500억 원 이상 국내 기업들은 2015년 말 기준 약 800여 곳이나, 국내 기업 상당수는 BEPS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
 - '15년 10월 PWC가 68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72%가 BEPS를 개념적으로만 인지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14%,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14%로 나타남
 - 또한 BEPS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등으로 조세 개정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36% 수준에 그쳐 국내 기업들은 BEPS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상태
 - 한국의 경우 당장 2017년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통합기업/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 시점부터 BEPS에 대한 이해와 영향도 분석, 필요 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BEPS 관련 법안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자사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글로벌 시장의 다국적 기업 66%가 BEPS 도입에 따른 리스크 감소를 위해 이전가격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음
 - 그 중 30%는 이미 재검토를 완료하고 정책 수정 중이며,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PA)*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도 약 30% 수준

[참고]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 기업이 사전에 과세당국과 합의를 통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소득을 조정하여 조세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제도

- 삼성, 현대차 등 해외 사업장 수 및 매출 규모가 큰 국내 대기업들도 조세제도 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정책 수정 및 이전가격 사전 협상 등 선제대응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
- BEPS 관련 전담인력, 전문가 충원, 시스템 개선 등 국제 조세 개정에 따른 경영 인프라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
 - BEPS 도입에 따른 국내 세법 개정 시 대상 기업들의 세무관련 업무시간과 투입노력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⁵으로 예상
 - 세법 개정에 따른 기업 차원의 제반 업무 증가, 과세당국의 공격적인 세무조사, 조세부담 확대 등 직·간접비용 증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큼
 - BEPS 도입에 따른 조세전담 담당 인력 추가, 국제 조세관련 전문가 영입, 필요 시 관련 제반 시스템 개선 필요성 검토 등 첫 번째 보고서 제출 (내년 3월 31일까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

□ BEPS는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조세회피 방지 및 국가 조세재정 확보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수익 감소, 글로벌 사업장 거래정보 노출 등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확대

- 내년부터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업무 및 활동, 매출 및 수익, 이전가격 정책 등에 관한 해외 주요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기업들에겐 큰 부담

⁵ 2015.10. 삼일 PwC가 주최한 "BEPS 관련 개정세법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사전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68개 기업 중 약 80%가 업무 확대에 대한 부담 우려

- 해외 비즈니스 및 사업장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정보 공유는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BEPS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 법안통과 및 세부내용 개정 중인 상황에서 과세당국과 기업의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한 의견교류 창구 확보를 통해 제도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되 국가의 자산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정책 개선 유도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

기획재정부. “OECD/G20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2015.10

삼일 PwC. “BEPS 관련 개정세법 동향 세미나 자료”, 2015.10

삼정 KPMG. “2016년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 자료”, 2016.2

안진 Deloitte.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 2015.10

[논문]

김경하. “BEPS Project 및 금융실명법이 과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 수집제도에 미치는 영향”, 조세학술논집 제31권 제3호, 2015.10

이찬근, 김성혁. “국제 조세체제와 BEPS 현상”,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2015.8

[언론]

Bloomberg. “What to expect from the BEPS project in 2016”, 2016.1.8

Financial Times. “Google hires US conciliator for lobbying role”, 2016.1.12

한국경제. “역외탈세 꿈수 막아라…G20 ‘脫稅와의 전쟁’”, 2016.1.26

한국경제. “年 매출 1000억 넘는 기업, 내년 3월까지 ‘BEPS 보고서’ 제출해야”, 2016.1.26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OECD (<http://www.oecd.org/tax>)

PwC (<http://www.pwc.com>)